

무인도(無人島) 관탈섬(冠脫島)

-관탈섬은 전라도강영감사공(全羅道康永監司公)이 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장소이다.-

가) 시대적 배경(時代的 背景)

조선(朝鮮)을 건국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대왕의 현비(賢妃) 신덕왕후(神德王后)는 고려말 판삼사문하찬성사(判三司門下贊成事)를 역임하였고 조선개국 후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으로 책봉된 강윤성(康允成)의 맏딸이다.

신덕왕후는 태조의 일곱째 아들 방번(芳蕃)과 여덟째 아들 방석(芳碩)과 경순공주(慶順公主)를 소생(所生)하였다. 오후라 1396년 (태조5년 · 丙子)에 천명(天命)을 다하였다.

조선 태조는 즉위초(卽位初) 세자책정문제(世子冊定問題)가 있은 후, 내심 방번을 책정코자 하였으나 제신(諸臣)들이 추천으로 의안대군(宜安大君) 방석(芳碩)을 1398년 (태조 7년 · 戊寅) 중춘(仲春)에 세자(世子)로 책정되었다.

이때에 정도전(鄭道傳)은 세자 승위(承位)를 안정케 하려는 목적으로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의 소생들을 지방(地方)으로 보내었다. 세자 책봉과 한씨 소생을 지방으로 분산함에 불만을 품은 다섯째 왕자 정안대군(靖安大君) 방원(芳遠)은 정도전과 남은(南閑) 등을 살해하는 일이 전개되었다. 세자 의안대군 방석은 이에 대전(對戰)코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398년 (태조7년) 8월에 폐위(廢位)되어 무안대군(撫安大君) 방석과 함께 귀양을 가던 중 서문에서 도륙(屠戮)되어 피살된 골육상쟁(骨肉相爭)이 첫 번째 왕자란이 발생되었다.

태조는 이를 불쾌하게 여겨 정사(政事)에서 손을 떼고 함흥처사가 되기 전 왕위(王位)를 둘째 왕자 영안대군(永安大君) 방과(芳果)에 양위하였다.

1399(개국8년 · 己卯)에 존호(尊號) 정종(定宗)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1400년(개국9년) 회안대군(懷安大君) 방간(芳幹)이 반란을 일으키자 정안대군(靖安大君) 방원은 이를 평정하는 등 왕위를 얻기 위해 두 번이나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일으켜 드디어 정종의 양위를 받은 방원은 1401년(개국 10년 · 辛巳) 11월에 태종(太宗)이란 존호로 즉위하였다.

이와 같이 그 당시 나라의 정세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급변하고 혼란스러웠다.

나) 전라강영감사와 관탈섬(全羅道康永監司와 冠脫島)

신덕왕후의 사촌 오빠인 전라康永감사는 본인에게 다가올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예견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가속(家屬)들을 충청도 보령에 은거(隱居)시키고 1402년(개국11년 · 壬午) 맹춘(孟春)에 제주도(濟州島)로 피신하게 되었다. 왜적을 두 번이나 격퇴시켰던 원수(元帥) 전라강영감사는 수로(水路)를 잘 알고 있었기에 범선(帆船)을 타고 「현해탄」을 넘어오던 중 제주도에 근접한 무인도(無人島)에 이르렀을 때, 제주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도안무사겸판목사(都安撫使兼判牧使)」 박덕공(朴德公)에게 심적부담을 덜게 하려고 해상범선(海上帆船)에서 관복을 벗고(冠服脫衣) 평복(平服)으로 갈아입어, 함덕 포구로 입도(入島) 하였다. 이 때부터 무인도를 이름하여 「관탈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 문헌]

가. 國史大事典(上)-1982.5.15 발행

- ①방원의 난 芳遠의 亂 P.555
- ②신덕왕후 神德王后 P.813
- ③이방간 李芳幹 P.1136
- ④이방빈 李芳蕃 P.1137
- ⑤이방식 李芳碩 P.1137

나. 濟州道誌(上)-1982.2.10. 발행

- ① 近代史(고려말 유신들이 유배) P.117
- ② 第一編 歷史 P.498

2010. 5. 5. 崇祖의 날

資憲大夫行全羅監司康永公의 18代孫 政統 識

[참고]

①流配란?

五刑이 하나로서 유형(流刑)이라 하며 네 번째 중죄인을 말한다. 유형은 죄인을 지방이나 변방 또는 섬 같은 곳에 귀향보내는 형으로 그이 죄가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원근(遠近)의 등급이 있었다.

②流配人이란?

죄인이 몸이 되어 관직과 품계를 밸령대장인 명부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관복을 나라에서 몰수한 후 (削奪官職) 서민복인 평복으로 갈아입히고 또 포박하여 관원들이 감시 아래 유배지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배지로 가는 도중 살해당하거나 무사히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유배인은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가속과 동행할 수 없으며 관복을 입고 유배지로 이송하는 사례는 더더욱 없었다.

漢齋 康政統